

#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공모 질의·답변서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A	1	17, 45	<p>항목: 2.2.2 참여자격, 4.1 1단계평가, 4.3.1 1단계평가, 양식 6~24</p> <p>4. 사업제안자는 추정 총사업비에 대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u>출자자의 투자확약서</u>,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 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 변경내용: (각종) 확약서 → 조건부약정서</li> <li>- 요청 투자확약서 변경제출일: 1단계평가(PQ) → 2단계평가(입찰서 제출시)</li> <li>- 요청 사유: 회사 프로세스 일정 관계로 1단계 평가 일정까지 제출이 비용이성. 우선대상자 선정 전, 투자 확약 불가.(무자격자의 확약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평가(PQ) 제출 서류 중 “&lt;양식 6&gt; 출자 투자 확약서” 를 “&lt;양식 6&gt; 출자 투자 확약서 또는 &lt;양식 6-1&gt; 조건부 투자 확약서” 로 변경함</li> <li>※ 정정, 변경, 신설 사항은 정오표 참고</li> </ul>
	2	28	<p>항목: 3. 2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양식 6-24</p> <p>○ 사업시행자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제주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지역업체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0% 이상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시공 참여 비율과 금액을 명시한 <u>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단, 공사비에서 지역업체가 수행 불가능한 <u>해상 관련 기자재, 변전설비 기자재, 송전케이블 제작은 공</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 변경사항: (각종) 확약서 → 조건부 약정서</li> <li>- 확인사항: 지역업체의 수행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 명확히 필요(해상 기초 제작 및 설치, 주기기 설치 공사, 해상 케이블 설치 공사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업체 시공 참여 확약서 제출은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li> <li>-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검토 및 제안하여야 함</li> </ul>
	3	34	<p>항목: 3.2.2 총사업비의 조정</p> <p>○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제안서상에 제시한 총사업비 내에서 재무모델의 항목 <u>간 금액은 3%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사항: 항목간 금액은 3%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제안서 제출 시, 실시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항목간 금액 변동의 소지가 크므로, 3%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모델 작성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li> <li>※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li> </ul>

구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4	34	<p>항목: 3.2.3 총사업비의 조정</p> <table border="1" data-bbox="486 422 1584 705"> <tr> <td data-bbox="486 422 1032 470">표 1</td> <td data-bbox="1032 422 1584 470">표 2</td> </tr> <tr> <td data-bbox="486 470 1032 705"> <p>○ 우선협상대상자는 가격 협상 과정에서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총사업비 등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대표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대표사업자의 귀책으로 누락되었을 경우 총사업비 및 지분율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에너지공사(주민참여 시 주민 포함)를 제외한 대표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단, 제안 당시(본 사업자 공모 공고에서 정한 사업제안서 접수일)를 기준으로 이후에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제도 등의 변경으로 합당하게 추가되는 항목 및 비용은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p> </td> <td data-bbox="1032 470 1584 705"> <p>○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가한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으며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만약 제3자가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책임을 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주에너지공사를 면책시키고, 관련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td> </tr> </table> <p>- 삭제요청: 대한민국의 상법상, 주식회사(SPC)는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 출자는 주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발생한 이익의 배분은 지분에 따라 배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손실발생시에는 자본금 한도 내에서는 주주에게 책임이 없으나 자본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주주별 출자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손실배분) 이 경우, 특정주주(제에공 및 주민주주)의 손실을 분담(추가출자)하지 않고 SPC 지분율의 변동이 없도록 운영하는 것은(표1) 대한민국의 상법상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특정주주의 이익 및 면책을 위한 배임에(표2) 해당되어 출자 기업의 감사 해당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표 1	표 2	<p>○ 우선협상대상자는 가격 협상 과정에서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총사업비 등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대표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대표사업자의 귀책으로 누락되었을 경우 총사업비 및 지분율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에너지공사(주민참여 시 주민 포함)를 제외한 대표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단, 제안 당시(본 사업자 공모 공고에서 정한 사업제안서 접수일)를 기준으로 이후에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제도 등의 변경으로 합당하게 추가되는 항목 및 비용은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p>	<p>○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가한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으며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만약 제3자가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책임을 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주에너지공사를 면책시키고, 관련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 대표사업자의 귀책으로 누락된 경우, 사업제안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하는 사항임</p>
표 1	표 2						
<p>○ 우선협상대상자는 가격 협상 과정에서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총사업비 등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대표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대표사업자의 귀책으로 누락되었을 경우 총사업비 및 지분율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에너지공사(주민참여 시 주민 포함)를 제외한 대표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단, 제안 당시(본 사업자 공모 공고에서 정한 사업제안서 접수일)를 기준으로 이후에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제도 등의 변경으로 합당하게 추가되는 항목 및 비용은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p>	<p>○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가한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으며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만약 제3자가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책임을 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주에너지공사를 면책시키고, 관련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5	88~91	<p>항목: 6.3.3 설계 및 시공</p> <p>- [O주요 기준]에 하기의 설계 기준 추가 부탁드립니다.</p> <p>○ 해외 기준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NV-OS-J101 : Design of Offshore Wind Turbine Structures,</li> <li>• DNV-OS-C101 : Design of Offshore Steel Structures, General (LRFD METHOD)</li> <li>• DNV-RP-C203 : Fatigue Design of Offshore Steel Structures</li> <li>• DNV-RP-C205 :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Loads</li> <li>• NORSOK-N-004 : Design of Steel Structures</li> <l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 API RP 2A Working Stress Design</li> <l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 API RP 2A Load and Resistance Factor Design</li> </ul> <p>○ 국내기준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및어항설계기준</li> <li>• 도로교설계기준</li> </ul>	<p>- 공모지침서 내 “기타 본사업과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은 해상풍력 설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직접 열거하지 않은 법령, 제도 등을 포괄하는 의미임</p>				

구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li> <li>• 건축구조설계기준</li> <li>• 강구조설계기준</li> </ul>		
B	1	4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항목: 1.3 사업개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 154kV 조천변전소 ~ 154kV 성산변전소 간 송전선로 관련 상세자료 및 한전과의 협의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가 직접 한전과 협의하여 협조받아야 하는 사항임</li> </ul>
	2	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항목: 1.4 사업 추진 절차 및 진행방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절차도에 제시된 일정 준수 어려움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사유1) SPC 설립 후 재원조달/공사착공까지 3개월 일정 준수 어려움(최소 2년 걸림) 사유2) REC 경쟁입찰 1년에 한번(10월 1회) 시행 사유3) 기재부 예타 대상일 경우 정부 협의 최소 1년 소요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지침서 p. 5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계획에 따라 일정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li> </ul>
	3	16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항목: 2.2.1 참여조건</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4월 행정예고(RPS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_풍력주민 참여비율에 따른 추가 REC 가중치 부여 기준 개선)관련 자기자본은 삭제, 총사업비 비율이 변경될 예정인데 공모기간 중 변경될 경우, 한동평대도 적용받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고시(총사업비 비율 기준)에 따름. 본 사업의 REC 가중치를 확정 전 고시가 변경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대표사업자와 공사 간 협의하여 적용</li> </ul>
	4	17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항목: 2.2.2 참여자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 특성상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확약서는 정부 부처(기재부, 산업부 등)와의 사전 협의 및 여러 내부 심의를 거쳐야만 제출할 수 있어 많은 소요 기간이 필요하므로 1단계 평가(PQ)에 매우 불리한 항목임. 이에, 조건부 투자확약서 및 2단계 평가항목(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1 답변 참고</li> </ul>
	5	28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항목: 3.2.1 사업제안</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참여형 설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공단 포함)가 부지(해상포함) 또는 시설물 등을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익 공유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에 인정됨 이에, 제주에너지공사는 지자체와 사업자 모두 해당되는데 지자체 참여형 설비에 해당하는 가중치(0.1)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참여형 설비 대상에 해당함</li> </ul>

구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6	30	<p>항목: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p> <p>- 제주에너지공사의 초기사업비(60억)는 부대비 비고 항목에 명시된 비용이 전부 반영된 건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부족분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공모지침서 p. 36에 사업개발비는 60억 원(VAT 제외)을 반영토록 명시되어 있음</p>
7	31	<p>항목: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p> <p>- 변전소 부지 제공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마을과 협의, 진행된 상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민원여부와 계약조건 등 협의했던 세부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변전소 부지 제공은 마을 총회를 거쳐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임.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추후 설립될 사업시행자가 확정할 사항임</p>
8	31	<p>항목: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p> <p>- 변전소 부지 관련 비용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어 운영비로 충당해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공모지침서에는 총사업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 운영비는 공모지침서 p. 32를 참고하여 사업제안자의 검토 및 제안 사항임</p>
9	31	<p>항목: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p> <p>- 변전소 매입 또는 임대 비용이 과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대책과 초과 비용 분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공모지침서 p. 31에서 변전소 부지는 발전단지 유치마을의 제공사항임</p>
10	31	<p>항목: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p> <p>- 인접토지의 공시지가(200,000원/㎡) 및 지가 상승률(연 5%) 산출 근거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관련 조례를 감안하여,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시한 수치임</p>
11	31	<p>항목: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p> <p>- 실제 운영시 예상대비 수익이 감소될 경우에도 확정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공모지침서 p. 85에서 최소 수익 보장 규정에 따라 처리함</p>
12	31	<p>항목: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p> <p>- REC 금액은 제시하되 확정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정받는 REC 가중치 및 금액만큼 지급 가능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공모지침서 p. 85에서 최소 수익 보장 규정에 따라 처리함</p>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13	32	<p>항목: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p> <p>『사업운영기간 중 재원조달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사업수익률에 의해 반영되어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 포함)는 시설사용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으로서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p> <p>- 해당 조항에 대한 명기사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질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14	33	<p>항목: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p> <p>- 제주 전력계통 운영상 불가항력 사유(계약발전 등)에 대해서도 운영비 변경사유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사업자가 그 부족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 특정주주 이익과 손실 보전에 대한 내용은 삭제 바랍니다.</p>	-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
15	34	<p>항목: 3.2.3 총사업비의 조정</p> <p>- 제주에너지공사 및 평대리 주민은 사업시행자(SPC)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책임 배제 조항으로 다소 불공정한 내용으로 사료되며, 예측 불가능한 민원 등으로 인해 예비비가 증가될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대표사업자가 그 부족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 특정주주 이익과 손실 보전에 대한 내용은 삭제 바랍니다.</p>	<p>- 예측 불가능한 민원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사업비 조정에 해당됨</p> <p>- 이외 내용은 A-4 답변 참고</p>
16	34	<p>항목: 3.2.3 총사업비의 조정</p> <p>-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제안서상에 제시한 총사업비 내에서 재무모델의 항목간 금액은 3%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한 사유와 재무모델 항목간 금액 3% 초과는 구체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A-3 답변 참고
17	34	<p>항목: 3.2.3 총사업비의 조정</p> <p>- 사업시행협약으로 확정된 총사업비는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사항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총사업비 허용조항에 대해 증가되면 증가사업비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 평대리 마을에서 지분율에 의거 공동분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공모지침서 p. 16, 34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따라 사업시행협약, 주주협약에서 명시할 예정
18	51	<p>항목: 4.3.2 2단계 평가</p> <p>- GPA 비회원국 소속 회사와 MOU 또는 합작 등을 하여 국내공장에서 조립, 국내회사의 이름으로 기자재를 납품할 경우 국산제품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 GPA 제품 충족 여부는 사업제안자 책임으로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함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19	51, 52	<p>항목: 4.3.2 2단계 평가</p> <p>- 사업제안자 제안액에 대한 내용은 매우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지침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예비비(예기치 못한 민원, 어업피해보상 + 수협 + 어선주 협회 등) 및 보상비(계통연계 경과지 민원 보상비 등)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p>	<p>- 공모지침서 p. 31에 따라 항목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제안자가 필요한 금액은 추가 반영하여야 함</p>
20	52	<p>항목: 4.3.2 2단계 평가</p> <p>- 상업운전을 '26년 9월에 시작할 경우에도 개시월에 따른 월별 금액이 아닌 개시년에 해당하는 연간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배당금은 PF 약정 배당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상업운전개시일을 기준으로 양식 18 ~ 23을 참고하여 사업제안자가 제안하여야 하는 사항임</p>
21	52	<p>항목: 4.3.2 2단계 평가</p> <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제주에너지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용 할인율(6%)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시한 수치로 변경 불가함</p>
22	58	<p>항목: 4.3.2.2 정량적 평가</p> <p>-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납부금액의 경우 제주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 제안이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당금 및 이익 공유화 항목을 세분화하여 배점한도 제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조례에서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납부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시 필요</p> <p>- 세분화 수치 제시는 어려우나, 세부 항목을 골고루 충족시켜야 평가에 유리함</p>
23	74	<p>항목: 5.3.1 사업이행보증</p> <p>-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출자 및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및 기재부 승인, 내부 이사회 통과 등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하므로 시행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불가능하기에 국가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기간연장이 필요합니다.</p>	<p>-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p>
24	75	<p>항목: 5.3.1 사업시행자 설립</p> <p>- 공기업 특성상 SPC 구성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기재부, 산업부 등)에서의 허가 및 여러 내부 심의를 거쳐야만 제출할 수 있어 많은 소요기간이 필요하므로 6개월 내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제주에너지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기간 변경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공모지침서 p. 7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 설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p>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25	82	<p>항목: 6.2.3 이사회 구성 및 운영</p> <p>『제주에너지공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직원을 사업시행자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인건비 등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인력 파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p> <p>- SPC에서 임직원의 인원 자격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해당사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임직원을 SPC에 파견할 경우 인건비 등 소요경비는 원소속사에서 지급하며, 제적 전출하였을 경우에만 인건비 등 소요 경비를 SPC가 부담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질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26	85	<p>항목: 6.3.1.10 발전단지 운영관리 시스템 및 유지보수</p> <p>『사업시행자는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의 이용편의를 위해 소스코드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주에너지공사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제공하여야 한다. 소스코드 제공이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는 20년간 무료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p> <p>- 사업시행자를 SPC로 용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
27	85	<p>항목: 6.3.1.11 최소 수익 보장</p> <p>- 초과 수익분과 같이 손실분에 대해서도 출자자간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가 필요합니다.</p>	- 공모지침서 p. 85에서 최소 수익 보장 규정에 따라 처리함
28	93	<p>항목: 6.3.3.4.1 발전단지 개요</p> <p>- LCR 기준에 따라 반영되는 내부망 적용거리 가중치가 삭제되는 것으로 행정예고(RPS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_풍력주민 참여비율에 따른 추가 REC 가중치 부여 기준 개선)되어있으며 공모기간 중 변경이 확정될 경우, 한동평대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 공모지침서 p. 40, 122, <양식 9> 주석의 규칙에 따라 REC 가중치 산정 시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제안자는 제출
29	97	<p>항목: 6.3.3.4.2 입지조건</p> <p>- 제시된 2022년 기준 풍력발전 전체발전량 비중은(4.43%) 은행권에서 기준하고 있는 PF출력제한율(10%)에 턱없이 작은 수치입니다.</p> <p>- 또한, 출력제한 발생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SPC 구성원인 제주에너지공사 및 주민의 공동책임과 관련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입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p>	<p>- 출력제한은 사업제안자가 검토 및 제안하여야 하는 사항임</p> <p>- 공모지침서 p. 85에서 최소 수익 보장 규정에 따라 처리함</p>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30	105	<p>항목: 6.3.3.4.3 설계시 반영사항</p> <p>『사업시행자는 풍황 분석 및 발전기 배치, 그리고 발전량 계산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Wind pro를 사용해야 하며 풍력발전기의 내구성(발전기 수명) 및 발전량 등 각종 계산자료(전자파일 포함)를 작성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해상 풍력발전 단지 배치에 따른 프로그램 Wind pro setting 자료, 내구성 검토 자료,소음, 그림자 영향, 하중분석 등 Wind pro 자료(전자파일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해야 한다.』</p> <p>- 상기 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사례가 없어 지적 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합니다.</p>	<p>- 사업제안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역무임</p> <p>- 상기 항에서 “그림자 영향” 은 삭제함</p>
31	110	<p>항목: 6.3.5 민원처리</p> <p>- 제주에너지공사 및 평대리 주민은 사업시행자(SPC)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책임 배제 조항으로 다소 불공정한 내용으로 사료되며, 손실 발생에 대한 공동책임 과 관련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제주에너지공사와 평대리는 사업시행자(SPC)에 지분참여로 포함됨</p>
32	110	<p>항목: 6.3.5 민원처리</p> <p>- 본 사업과 관련한 제주에너지공사와 마을과의 협의내용 및 관련사항이 지침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민원처리는 사업시행자(SPC) 역무로 추후 인계·인수 예정</p>
33	111	<p>항목: 붙임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p> <p>- 물가상승율 등 주요지표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치를 사업제안자가 변경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시한 수치임</p>
34	111	<p>항목: 붙임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p> <p>- SMP, REC 수의계약 제도는 종료 예정이므로 풍력고정가격 경쟁입찰 결과로 선정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질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p>
35	-	<p>항목: 양식6~23</p> <p>- 양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확정치(값) 아닌 사업제안을 위한 계획치(값) 또는 예상치(값)이므로 각종 양식 주석란에 별도 주석을 추가하여 단지 “계획” 임을 명확하게 명시하려고 하오니 조건부에 대한 반영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A-1 참고</p>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36	-	<p>항목: -</p> <p>- 출력제한 및 발전량 부족 등 문제 발생시 제주에너지공사는 주주로서 공동책임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진행과정에서 10% 지분에 맞게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사업제안자가 출력제한을 고려하여 발전량을 제시하여야하는 사항이며, 공사의 역할은 사업제안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p>
1	4	<p>항목: 1.3 사업 개요</p> <p>- 변전소 후보지 1, 2의 경우 부지관련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매매 or 임대차 / 금액 / 소유자 수 등등)</p>	<p>- B-7 답변 참고</p>
2	4	<p>항목: 1.3 사업 개요</p> <p>- 변전소 후보지를 직접 제안하는 경우, 부지사용협의 등에 대한 업무는 제안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지는 않는지)</p>	<p>- 사업제안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p>
3	31	<p>항목: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p> <p>- 총 투자비(5,900억)에는 변전소 부지 비용은 제외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p>	<p>- B-8 답변 참고</p>
4	97	<p>항목: 6.3.3.4.2 입지조건</p> <p>- 재무모델 작성시 제주도 출력제한 기준비율은 4.43% 수준으로 가정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출력제한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현 시점 실제 예상되는 출력제한 비율 확인 필요)</p>	<p>- 사업제안자 책임하에 제안하여야 함</p> <p>- 출력제한 최소화 방안 관련 사항은 삭제함</p>
5	16	<p>항목: 2.2 참여 조건 및 자격</p> <p>- 평대리, 한동리의 경우 주민참여 자금조달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정책자금대출 활용하여 최대 90%를 대출 받을시 나머지 10%에 대한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주민참여 수 / 대출 필요 여부 등 확인도 부탁드립니다.)</p>	<p>- 주민참여 자금조달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발전단지 유치마을 협의</p>
6	86	<p>항목: 6.3.1.15 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조치 및 권한</p> <p>- 사업시설 철거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허가 조건에 본 사업의 운영기간이 20년으로 고정되어있는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p>	<p>- 공모지침서 p. 85에 따라 20년을 원칙으로하며, 관련 법에 따라 연장 가능함</p>

구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7	34	<p>항목: 3.2.3 총사업비의 조정</p> <p>- SPC 설립후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에너지 공사를 제외하고 초과사업비를 부담한다면, 유상증자 인정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합당한 사업비 증가의 경우)</p>	- B-17 답변 참고
8	51	<p>항목: 4.3.2 2단계 평가</p> <p>- SPC가 운영기간 20년동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 지자체 및 주민참여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 발전단지 유치마을 발전기금, 제주 에너지공사 발전기금 등의 비용들을 모두 부담시 PF 진행단계에서 현금흐름 악화로 대주단 모집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에 대해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p> <p>→ 예를 들면 워터폴 상 비용 처리 순서를 조정하여도 지급 금액 전액이 평가에 반영되는지요?</p>	-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
9	17	<p>항목: 2.2.2 참여자격</p> <p>- 참여자격 증빙시 시공/운영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인정 여부 질의드립니다.</p>	<p>- 참여 비율에 따라 인정함</p> <p>※ 예시) 시공 참여 비율 10%, 발전소 용량 1,100MW일 경우, 110MW 실적 인정</p>
10	17	<p>항목: 2.2.2 참여자격</p> <p>- 참여자격 중 100MW 운영실적의 경우는 발전사업자의 운영실적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O&amp;M 계약 체결하여 수행한 것도 인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p>	- 발전사업자의 운영실적만 인정함
11	17	<p>항목: 3.2.1 사업제안</p> <p>-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제출시 대출의향서 제출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p>	- 공모지침서 p. 17에 따라 대출의향서 제출 불가함
12	28	<p>항목: 3.2.1 사업제안</p> <p>- 제주지역 지역공사업체 리스트 공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p>	- 사업제안자의 검토 및 제안 사항
13	17	<p>항목: 2.2.2 참여자격</p> <p>- FI 사업자 참여시도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p>	- 공모지침서 p.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14	17	<p>항목: 2.2.2 참여자격</p> <p>- 제출해야 한다면 FI의 경우 투자기관들 모집 후 나중에 펀드가 설립되어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출자확약할 주체가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p>	- 공모지침서 p. 17에 따라 대체 서류 제출 불가함
15	17	<p>항목: 2.2.2 참여자격</p> <p>- 심사특하는 조건으로 대출확약서 제출함” 등의 문구 삽입하여 조건부 대출확약서와 같이 조건부 투자확약서 제출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p>	- A-1 답변 참고
1	32	<p>항목: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p> <p>- 운영비용의 산정 항목 중 ‘관리동 토지임대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동 부지 후보지가 지정되어 있는지요? - 지정되어 있다면 그 위치와 규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미지정이라면 사업제안자가 후보지 지정 및 임대료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요?</p>	- 관리동 부지는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료는 변전소 후보지 외 부지에 관리동을 구축할 경우 적용
2	33	<p>항목: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p> <p>- 33페이지의 운영비용의 산정 항목 중 ‘변전소 토지이용료’가 운영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공모지침서 31페이지에 따르면 변전소 부지 관련 비용 중 임대 비용에 대해 “사업시행자 설립 후 변전소 부지 제공 마을과 협의하여 반영한다”라고 되어있어 내용이 상충됩니다. 변전소 토지이용료에 대해 운영비용 산정 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p>	- 발전단지 유치마을이 제공하는 변전소 후보지 외 부지를 선정할 경우 필요시 운영비에 반영
3	34	<p>항목: 3.2.3 총사업비의 조정</p> <p>○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가한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으며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만약 제3자가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책임을 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주에너지공사를 면책시키고, 관련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 위에서 굵게 표시한 문구의 경우 사업제안자가 제3자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그 제3자가 제주에너지공사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p>	- 공모지침서 p. 34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4 111	<p>항목: 붙임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p> <p>- 제안된 SMP 및 REC 단가에 대해, 계획된 고정가격계약은 제주에너지공사와의 수의계약인지요? 아니면 입찰계약인지요?</p>	- 사업제안자의 검토 및 제안 사항임
	1 3, 5	<p>항목: 1.3 사업 개요</p> <p>- 3페이지에 사업기간은 2026년 8월까지, 상업운전개시일은 26년 9월로 되어있습니다. 입찰 제안서 작성 시 2026년 9월을 상업운전개시일로 정하여, 공사계획, 재무모델 등 사업 계획들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체결 후 실제 상세일정에 대하여는 제주에너지 공사와 협의 후 변경을 하는 것인가요?</p>	- 공모지침서 p.5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함
	2 4	<p>항목: 1.3 사업 개요</p> <p>- 해상풍력 변전소 및 성산변전소까지 송전선로 지중화 선로(경과지)는 사업제안자의 책임하에 사업제안자가 제안 가능한 사항인가요?</p>	- 사업제안자의 책임하에 검토 및 제안 사항임
	3 4	<p>항목: 1.3 사업 개요</p> <p>- 경과지에 대한 지장물 협의는 개별 사업제안자가 관련 기관 (한전, KT 등) 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인가요?</p>	- 사업제안자의 책임하에 검토 및 제안 사항임
E	4 4	<p>항목: 1.3 사업 개요</p> <p>- 성산 변전소 접속용량(연계 가능 용량), 접속방법, 접속 비용 등 한전협이는 개별사업자가 한전과 협의해야하는 사항인가요?</p>	- 사업제안자의 책임하에 검토 및 제안 사항임
	5 16, 123, 양식	<p>항목: 2.2.1 참여 조건,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양식 5, 25</p> <p>- 주민참여형 지분 산정에 있어, 자기자본 비율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제안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비율을 산정할 시 채권형 참여 비율도 자기 자본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합니다.</p>	- 채권참여는 자기자본에 포함하지 않음
	6 16, 123, 양식	<p>항목: 2.2.1 참여 조건,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양식 5, 25</p> <p>-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인 상황에서 주민 우대 가중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형 지분이 자기자본의 20%, 총 사업비의 2% 이상 참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3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재행정 예고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추어 총사업비 2%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p>	- B-3 답변 참고

구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7	16, 123, 양식	<p>항목: 2.2.1 참여 조건,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양식 5, 25</p> <p>- 주민참여 우대가중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자본의 비율이 10%인 경우, 총사업비의 2% 및 자기자본의 20%를 주민참여형 지분으로 만족시켜야 한다면, 한동리 및 평대리 지분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하나요? 즉, 채권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한동리 지분을 우대 가중치를 인정받기 위한 자기자본의 20%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p>	<p>- 주민참여 비율은 지분 및 채권 참여를 포함하며, 지분율에는 반영하지 않음 ※ 주민참여 비율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1679 457 2371 701"> <thead> <tr> <th>구분</th> <th>지분율</th> <th>주민참여율</th> </tr> </thead> <tbody> <tr> <td>한동리(채권)</td> <td>-</td> <td>7.69%</td> </tr> <tr> <td>평대리(지분)</td> <td>12.31%</td> <td>12.31%</td> </tr> <tr> <td>공사</td> <td>10%</td> <td>-</td> </tr> <tr> <td>사업제안자</td> <td>77.69%</td> <td>-</td> </tr> <tr> <td>합계</td> <td>100%</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지분율	주민참여율	한동리(채권)	-	7.69%	평대리(지분)	12.31%	12.31%	공사	10%	-	사업제안자	77.69%	-	합계	100%	20%
구분	지분율	주민참여율																			
한동리(채권)	-	7.69%																			
평대리(지분)	12.31%	12.31%																			
공사	10%	-																			
사업제안자	77.69%	-																			
합계	100%	20%																			
8	28, 125, 양식	<p>항목: 3.2.1 사업제안,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양식 24</p> <p>- 해상풍력 발전기, 하부 기초, 해저 케이블 등 자재와 관련된 시공은 해상 관련 전문 시공 경험이 있는 대형 건설사 또는 해외 시공사에서 가능한 공사이며, 중대재해예방, 책임준공등으로 지역업체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역업체 참여 범위를 구체화.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범위는 지역업체의 시공, 구매가 불가능한 해상 관련 기자재, 해상케이블 및 해상 시공을 제외한 육상 관련 기자재, 시공 등 지역업체의 구매 및 시공이 가능한 육상 관련 공사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A-2 답변 참고</p>																		
9	28, 125, 양식	<p>항목: 3.2.1 사업제안,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양식 24</p> <p>-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공정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고,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추진 협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정량적 평가의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양식 24 첨부로 지역업체 참여 공정 내역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추진 협약서 제출 추가)</p>	<p>- 공동도급 추진협약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금액과 비율에 대한 계획 및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p>																		
10	28, 125, 양식	<p>항목: 3.2.1 사업제안,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양식 24</p> <p>- 지역업체 참여는 공동도급자로서 참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p>	<p>- 공동도급을 포함한 원도급을 의미함(부실공사방지, 지역업체 역량 강화)</p>																		
11	35	<p>항목: 3.2.4 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 지급 등 발전 기여</p> <p>- “주민참여 설비에 대한 공급인증서의 우대가중치 획득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익분의 주민 환원에 대한 방법 및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에서 정성평가가 오타가 아닌가요? (정량평가로)</p>	<p>- 정성평가를 정량평가로 정정</p>																		

구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12	40, 122, 양식	<p>항목: 3.6 2단계 평가 제출 서류,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양식 9</p> <p>- 국내부품 사용 비율(LCR) 협약서 대상 발전기는 공모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공모일 이전 상용화가 되어 국내 인증을 득한 발전기에 한하여 적용하라는 뜻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p>	<p>- 공모지침서 p. 40, 122, &lt;양식 9&gt; 주석의 규칙에 따라 REC 가중치 산정 시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제안자는 제출</p>
13	53, 58, 59	<p>항목: 3.6 2단계 평가 제출 서류,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양식 9</p> <p>- 주민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 및 유치마을 발전기금은 발전단지 유치마을별로 제안하되, 지급비율은 평대리 12.31%, 7.69% 와 동일한 비율 즉 61.55%, 38.45% 로 제안하면 되는 것인가요?</p>	<p>- 주민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 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은 주민참여 비율을 기준으로 함</p>
14	54, 119	<p>항목: 4.3.2.1 정성적 평가,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p> <p>- 정성적 평가 중 재원조달계획의 경우, 정량적 평가 항목인 출자금, 대출금의 구체적 금액과 대출기관, 출자자 등 사업제안자를 암시하는 회사명의 표기가 가능한 것인가요? (별점 0.1점 / 1건당 , 최대 1점 인 부분에 대하여)</p>	<p>- 공모지침서 p. 112에 따라 원본을 제외한 사업제안서의 모든 제출 서류 내에는 사업제안자의 상호, 명칭, 이름, 마크(심벌 등) 등 사업제안자를 가늠할 수 있는 문구, 단어, 표식 등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표기가 불가하며 만약 표기 시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됨</p>
15	57, 84	<p>항목: 4.3.2.1 정성적 평가, 6.3.1.6 지역 경제 활성화</p> <p>- 발전단지 유치마을의 숙원사업에서 한동리의 경우 용암해수사우나의 구체적 사업계획(위치, 규모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필요 제원 확보는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나요? 혹은 유치마을 발전기금 또는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제원을 마련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필요 제원을 어떤식으로 마련하고 반영하는지 혹은 향후 사업비에 추가를 해야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p> <p>- 추가로, 평대리의 경우, 주민숙원사업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제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p>	<p>- 평대리의 경우에도 양 발전단지 유치마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제안자가 자유롭게 검토 및 제안하여야 함</p>
16	74, 양식	<p>항목: 5.3.1 사업이행보증</p> <p>-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는 입찰 제안서 어느 장에 제시해야하는 것인가요?</p> <p>- “양식 10” 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p>	<p>-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는 대표사업자 이행사항임</li> </ul> <p>- 사업제안서 제출 시 &lt;양식 10&gt; 제출</p>

구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17	97	<p>항목: 6.3.3.4.2 입지조건</p> <p>- 사업제안자가 출력제한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보고서 어느 장에 제시해야 하는 것인가요?</p>	<p>- 출력제한 최소화 방안 관련 사항은 삭제함</p>
18	111	<p>항목: 붙임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p> <p>- SMP 및 REC 단가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장기 고장가 계약 시 확정된 이후 사업비, 기부금, 지원금 등이 재협의 대상인가요?</p>	<p>- 공모지침서 p. 85에 따라 최소 수익은 보장하며, 초과 수익은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함</p>
19	113	<p>항목: 붙임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p> <p>- 표지, 칼라인쇄면도 쪽수에 제외되는지? A3는 4쪽으로 산정하나요? - 또한, 칼라인쇄면 10페이지 이내는 A4기준인가요? 즉, A3 칼라인쇄는 칼라인쇄면 2페이지로 산정할까요? - 그리고, 발표자료는 전체 칼라로 작성 가능한가요?</p>	<p>- A3는 A4와 동일 기준 적용 - 공모지침서 p.113, 114 내용에 따름 - 발표자료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p>
20	122	<p>항목: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p> <p>- 정성평가항목의 유치마을 숙원사업 실현계획 및 기타 수익 환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지원금은 공사비의 1.5% 이며, 일반지원금은 0.1 원/kwh로 사업비 및 공사비의 추정이 가능합니다.</p>	<p>- 공모지침서 p. 57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정하고, p. 122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 작성 지침을 정정함</p>
21	양식	<p>항목: 양식 14~17</p> <p>- 양식 14~ 양식 17을 A3 단면으로 제시 가능한지? - 그리고 공모 지침서의 전체 양식을 제주에너지공사가 한글파일로 제공할까요?</p>	<p>- 공모지침서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여러 장으로 제출 가능함 - 공모지침서 양식은 사업자 공모 공고(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3-36호) 붙임 참고</p>
22	양식	<p>항목: 양식 18~23</p> <p>- 할인율 6%를 적용할 경우 본 양식들과 수치가 상이합니다. - 재산정하여 양식에 적용하는 20년 동안 할인율을 다시 제시부탁드립니다.</p>	<p>-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p>
23	5	<p>항목: 1.4 사업추진 절차 및 진행 방법</p> <p>- 금융사 선정이 24년 2월에 나와있습니다. 사업참여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금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수익계약이 가능한지요? 재무적 투자자로서 입찰제안서 작성 시 금융조건 이익공유화 등 재무보고서(정량평가)를 작성하는 사업자로 참여합니다.</p>	<p>- 공모지침서 p. 81, 82 내용에 따름</p>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24	17	<p>항목: 2.2.2 참여 자격</p> <p>-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 확약서, 타인자본에 대한 대출 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 확약서 제출이 나와 있습니다. 본 확약서는 구속력이 있는 문서여야 하는가요?</p>	- 법적 구속력 필요함
25	59	<p>항목: 4.3.3 가점 기준</p> <p>- 의결권 위임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기간동안 특히, 해상공사 건설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책임준공 등 대형건설사의 역무가 중요하여 사업제안자로서 건설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의결권 위임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투자자로 참여하는 취지는 살려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p>	- 의결권 위임 시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1	6, 75	<p>항목: “사업제안자” 컨소시엄 구성</p> <p>- “사업제안자” 컨소시엄시 구성원(법인)의 최소 참여 지분을 기준에 대하여 문의</p>	- 사업제안자가 자유롭게 컨소시엄 구성 및 제안하여야 함
2	26, 91, 96, 122	<p>항목: 자료의 활용</p> <p>-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 사업제안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풍황 자료를 활용한 발전량 분석 및 제시 가능한지 문의 ※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 관련 사업자 공모 지침서 26페이지는 ‘참고용’으로, 122페이지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로 서로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음</p>	- 공모지침서 p. 26에 따라 가능함
F 3	31	<p>항목: 한전 접속비용의 범위</p> <p>-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55조 송전접속비용의 구성에서 정의하는 접속비용 항목을 전체를 운영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문의</p>	- 사업제안자의 검토 및 제안 사항임
4	113	<p>항목: 제안서 작성 기준</p> <p>- 신청서류 ‘제2권 사업제안서(정성지표)’ 중 칼라인쇄면(또는 컬러면수)의 경우 허용쪽수인 200페이지에 포함되는지 문의 - 칼라인쇄면(또는 컬러면수)의 범위에 색간지(청색)이 포함되는지 문의 - 신청서류 “발표자료(PPT)”의 컬러면수 제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p>	- E-19 답변 참고

구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5	46	<p>항목: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마련 요청</p> <p>- 사업제안서 2단계(기술능력 및 재무능력)의 세부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후 평가시 공정성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평가기준 마련 제안</p>	<p>- 질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p>
6	88~90	<p>항목: 준수해야 할 법·제도 등</p> <p>- ‘내선규정’, ‘배전규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폐지된 규정이므로, 신설된 규정(KEC,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정정 요청</p>	<p>- 공모지침서 p. 90의 내용을 삭제하여 적용 · ‘내선규정’, ‘배전규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삭제함</p>
7	111	<p>항목: 공모지침서 기준 준수</p> <p>-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작성의 기준으로 명시된 주요지표(물가상승률 연1.5%, 할인율 6%, SMP 및 REC 단가 165원/kWh 등)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입찰방해’ 및 “사업제안자”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 문의</p>	<p>-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p>
8	105, 122	<p>항목: 발전량 산정 인증기관의 범위</p> <p>- 해외인증기관의 경우 Windpro setting 자료 등 전자파일을 제공치 아니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자 공모지침서(6.3.3.4.3 설계 시 반영사항 / 하. 기타 / 4) 관련)의 준수를 위해, “(1) 풍력발전 설계기술용역 실적” 및 “(2) 발전량보고서 인증기관 검토보고서 실적”이 있는 회사(ex. 엔지니어링사)가 발전량 산정을 위한 전문인증기관에 포함되는지 문의</p>	<p>- 공인된 풍력발전 관련 인증기관에 한함</p>
9	3	<p>항목: 공모기준 중 우선순위</p> <p>- 공고문, 공모지침서, 현장설명회자료, 질의답변 간 내용이 상충될 경우 각 자료별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의</p>	<p>- 사업자 공모 이후 공모지침서 관련 서면 질의답변 → 공모지침서 → 공고문 → 현장설명회 자료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p>
10	7, 46, 51, 58, 124	<p>항목: 용어의 적용 오류 등</p> <p>- 공모지침서 중 “유치마을 지원금”과 “유치마을 발전기금”의 사용이 혼재 또는 오기되어 있어, 확인 후 정정 요청</p>	<p>- 공모지침서 내용을 정정하여 적용 · (p. 46, 52, 58, 124) 배당금 및 이익공유화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인 “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을 “발전단지 유치마을 발전기금”으로 정정 ※ 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은 MW당 1,000만원을 의미함(1.5 용어의 정의 중 p.7 참고)</p>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11	36, 82	<p>항목: 출자자 변경 등</p> <p>- 대표사업자” 로 선정 이후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의하여 출자자 또는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을 통해 설계사, 건설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설계, 시공 등을 각 출자자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p>	<p>-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 · P. 75, 82 참고</p>
12	88	<p>항목: 주기의 정의</p> <p>- 풍력발전기 주기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lt;표1 : 구성품별 기준비율&gt; 중 터빈, 블레이드 및 타워를 정의하는지 문의</p>	<p>- 풍력발전기 주기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lt;표1 : 구성품별 기준비율&gt; 중 터빈, 블레이드 및 타워를 의미함</p>
G 1	51, 57, 88	<p>항목: 4.3.2 2단계 평가, 4.3.2.2 2) 발전량 및 REC 가중치 산정의 적정성, 6.3.3 설계 및 시공</p> <p>모든 자재 및 기기는 정부기관에서 성능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풍력발전기 주기는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회원국 제품으로 한정한다.</p> <p>- 주기기만 GPA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제주에너지공사가 GPA대상이라면 전체 구매품에 대해 GPA를 적용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주기에 대한 GPA적용 삭제 요청 - 과거 동북리 풍력사업 사례의 경우 풍력터빈에 대한 공모였고 현재는 사업자 공모이므로 같은 사례로 적용이 어려움 - 더불어, 주기는 풍력사업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23년 3월 사전설명에는 언급이 없다가 사업공모서에 언급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편향성이 우려됨 - 풍력터빈(주기기)를 GPA대상국가로 한정할 경우 터빈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업비의 증가로 제주도민의 이익이 감소하므로 다시 한번 주기의 GPA적용 삭제 요청</p>	<p>-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p>
2	51, 57, 88	<p>항목: 4.3.2 2단계 평가, 4.3.2.2 2) 발전량 및 REC 가중치 산정의 적정성, 6.3.3 설계 및 시공</p> <p>- ○○기업 또는 ○○계열사는 ◇◇국가 □□기업의 풍력터빈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터빈을 조립, 생산할 계획임 - 그러나 일정상 사업공모서 제출일까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라이선스 계약을 전제로 사업공모서 제출 시 ◇◇국가 □□기업 모델을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 요청</p>	<p>-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p>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3	17, 45	<p>항목: 2.2.2 참여 자격, 4.1 1단계 평가, 4.3.1 1단계 평가. 양식 6~24</p> <p>4. 사업제안자는 추정 총사업에 대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b>출자자의 투자확약서</b>,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 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각종) 확약서를 조건부 약정서로 요청 - 투자확약서 변경제출일을 1단계 (PQ)에서 2단계 평가 (입찰서 제출시)로 요청</p>	- A-1 답변 참고
4	28	<p>항목: 3.2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양식 6-24</p> <p>- (각종) 확약서를 조건부 약정서로 변경 요청 - 지역 업체의 수행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 명확화 필요</p>	- A-2 답변 참고
1	4	<p>항목: 추정사업비</p> <p>- 추정 총사업비: 5,900억원(VAT제외) - 최근 진행 중인 제주 해상풍력 사업 총사업비와 비교해서도 환율, 원자재비, 물류비용 등이 인상되어있는 시장 여건상 총사업비가 과소한 것으로 보임</p>	- 질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2	6	<p>항목: 대표사업자 정의</p> <p>- “대표사업자” 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SPC) 구성원 전체라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p>	<p>-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 · (p. 6) 1.5.2 사업자의 지위 참고</p>
3	26	<p>항목: 보안서약</p> <p>- 대표사가 보안서약을 해야되는데, 대표사 외 컨소시엄 참여사 및 용역사에 공유 가능한가요?</p>	<p>- 보안서약자의 책임하에 컨소시엄 구성원 및 용역사에 공유 가능함. - 다만, 공유받는 자도 보안서약서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함</p>
4	28,59	<p>항목: 지역업체</p> <p>- 기자재 포함, 해상공사는 지역업체가 수행하기 불가능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명확한 제외 범위 명시 요청 - 지역업체가 원수급인 자격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수급인 자격으로 참여가능한 것인지</p>	<p>- A-2 답변 참고 - E-10 답변 참고</p>
5	31	<p>항목: 변전소 부지 비용 반영</p> <p>- 향후 변전소 부지(또는 대안 개폐소 부지) 매입 비용을 반영할 경우, 기 제출하게 되는 제안 사업비와 향후 매입비용을 더하여 총 사업비 5,900억원을 상회해도 되는 것인지</p>	-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조정 불가함. 다만, 민원 등 불가피한 시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조정 가능

H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6	37	<p>항목: 총사업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기자재(터빈 등)의 단종, 협상결렬, 원자재비/물류비 인상, 공급망 경색 등의 미래 불확실성이 큼</li> <li>- 제안 이후, 구조물 기초 공법과 형식 등의 변경 가능성이 큼</li> <li>- “제주에너지공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3.2.3 총사업비의 조정“, “6.3.1.1 총사업비의 조정“에 상기 내용 반영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li> </ul>
7	47	<p>항목: 실적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실적과 관련,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 증명이 가능함</li> <li>- 공관 확인 등의 절차가 불가능할 경우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건설협회 실적 증명서도 인정 가능</li> </ul>
8	48 양식 6	<p>항목: 투자확약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 투자확약서가 가능한 것인지</li> <li>- 각 제안자의 사정일 수 있으나, PQ제출 전까지 절대적 시간(내부검토, 투자심의, 이사회 등)이 부족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1 답변 참고</li> </ul>
9	105	<p>항목: 자료 제출</p> <p>4) 사업시행자는 해상 풍력발전 단지 배치에 따른 프로그램 Wind pro setting 자료, 내구성 검토 자료,소음, 그림자 영향, 하중분석 등 Wind pro 자료(전자파일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자료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인증기관이 WindPro raw data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많음</li> <li>- 해상프로젝트에서 그림자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30 답변 참고</li> </ul>
10	113	<p>항목: 실적증명서</p> <p>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단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도 해당 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li> </ul>
11	87	<p>항목: 의결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업무 감동 및 시정요구 등 필요한 요구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의결권 제한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함</li> </ul>

구 분	지침서 페이지	질의서 내용	답변
12	93 양식 9	<p>항목: LC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터빈 36.4%, 블레이드 14.3%, 타워 12.7%, 하부구조물 30%, 내부망 케이블 6.6%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달리 본 지침서는 발전기(터빈으로 해석됨) 부품 사용비율만 언급되어 있음</li> <li>-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한시적으로 기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이미 예상 가중치를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내부망 적용거리를 인정함</li> <li>-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판단됨</li> </ul>	- F-12, B-28 참고
13	86	<p>항목: 프로젝트 인증</p> <p>사업시행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 인증기관을 통해 프로젝트 인증(지지구조물과 풍력발전기 연결부 등 집중하중 취약 부위의 기술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부 등 취약 부위의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프로젝트 인증을 부분적으로 꼭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요?</li> <li>- 이에 대한 실제 프로젝트 인증서 확보 필요 여부</li> </ul>	-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름
14	110	<p>항목: 이용률</p> <p>상업 운전 개시 후 풍력발전설비의 가동률은 95%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고시」 [별표 4]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평균 이용률은 최소한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이용률은 연간 기준인가요?</li> <li>- 터빈사는 이용률을 보증하지 않음</li> </ul>	- 연평균 이용률을 의미함
15	110	<p>항목: 복구 완료</p> <p>사업시행자는 풍력발전설비 운전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후 24시간 이내 시정작업을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5시간 이내(야간 시 다음날 오전까지) 고장 발생 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 중고장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내 복구 완료는 기상조건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음</li> <li>- 중고장 외의 예외 조건이 요구됨</li> </ul>	- 중고장 외의 예외 사항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 정오표

○ (A-1 관련) 공모지침서 p. 17

당초	정정
<p style="text-align: center;">업휴지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등 필요 보험</p> <p>○ 사업자 공모 공고 기간 내 개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법인이 포함된 사업제안자에 한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귀책사유에 따라 대표사업자 귀책 위험, 불가항력인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각 책임과 비용을 사업시행협약에서 정한다.</p> <p><b>2.2.2 참여 자격</b></p> <p>○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는 사업제안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10년 내 준공된 단일 용량 100MW 이상의 국내·외 발전소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단, 태양광발전소는 제외)</li> <li>2.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는 최근 2년간 회사채 신용등급 A-(또는 이와 동급인 신용평가등급) 이상이어야 한다.</li> <li>3.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는 직전년도 결산 기준의 자본 총계가 추정 총사업비 이상이어야 한다.</li> <li>4. 사업제안자는 추정 총사업비에 대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b>출자자의 투자확약서</b>,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 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업휴지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등 필요 보험</p> <p>○ 사업자 공모 공고 기간 내 개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법인이 포함된 사업제안자에 한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귀책사유에 따라 대표사업자 귀책 위험, 불가항력인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각 책임과 비용을 사업시행협약에서 정한다.</p> <p><b>2.2.2 참여 자격</b></p> <p>○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는 사업제안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10년 내 준공된 단일 용량 100MW 이상의 국내·외 발전소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단, 태양광발전소는 제외)</li> <li>2.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는 최근 2년간 회사채 신용등급 A-(또는 이와 동급인 신용평가등급) 이상이어야 한다.</li> <li>3.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는 직전년도 결산 기준의 자본 총계가 추정 총사업비 이상이어야 한다.</li> <li>4. 사업제안자는 추정 총사업비에 대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b>출자자의 투자 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 확약서</b>,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 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ol>

○ (E-11 관련) 공모지침서 p. 35

당초	정정
<p><b>3.2.4 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 지급 등 발전 기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 (2015.11.) 및 「제주에너지공사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동안 발전단지 유치마을에 매년 MW당 1,000만원(양 마을 합산)의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별도로 적용됨)</li> <li>○ 발전단지 유치마을이 본 사업에 투자(채권 및 지분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의 20년 총액을 현재가치로 제시하여야 하며 정량평가에 반영한다.</li> <li>○ 주민참여 설비에 대한 공급인증서의 우대가중치 획득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익분의 주민 환원에 대한 방법 및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b>정성평가</b>에 반영한다.</li> </ul>	<p><b>3.2.4 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 지급 등 발전 기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 (2015.11.) 및 「제주에너지공사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동안 발전단지 유치마을에 매년 MW당 1,000만원(양 마을 합산)의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별도로 적용됨)</li> <li>○ 발전단지 유치마을이 본 사업에 투자(채권 및 지분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의 20년 총액을 현재가치로 제시하여야 하며 정량평가에 반영한다.</li> <li>○ 주민참여 설비에 대한 공급인증서의 우대가중치 획득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익분의 주민 환원에 대한 방법 및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b>정량평가</b>에 반영한다.</li> </ul>

○ (A-1 관련) 공모지침서 p. 39

당초	정정
<p><b>3.5 1단계 평가(PQ) 제출 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양식 1&gt; 사업제안서 제출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보고서 등록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첨부 1-1&gt; 대표사 선임서</li> <li>- &lt;첨부 1-2&gt; 컨소시엄 협약서(자유양식)</li> </ul> </li> <li>○ &lt;양식 2&gt; 법인사용인감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첨부 2-1&gt; 법인인감증명서</li> <li>- &lt;첨부 2-2&gt; 사업자등록증</li> </ul> </li> <li>○ 제1권 사전자격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양식 3&gt; 시공(운영) 실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첨부 3-1&gt; 시공(운영) 실적 증명서류</li> <li>· &lt;첨부 3-2&gt; 시공(운영) 능력 확인을 위한 업·면허 증명서류</li> </ul> </li> <li>- &lt;양식 4&gt; 신용등급 및 자본 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첨부 4-1&gt; 최근 2년간 신용평가서, 직전년도 결산보고서</li> </ul> </li> <li>- &lt;양식 5&gt; 사업시행자 구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lt;양식 6&gt; 출자 투자 협약서</b></li> </ul> </li> <li>-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협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협약서</li> </ul> </li> <li>○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사본, 담당자 명함(연락처, E-mail 주소 등)</li> <li>○ 제출 서류 목록 중 누락 항목이 있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업제안 자료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li> </ul> <p><b>3.6 2단계 평가(기술능력 및 재무능력) 제출 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권 사업제안서(정성지표)</li> <li>○ 제3권 사업제안서(정량지표)</li> </ul> <p>※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lt;붙임1&gt;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및 목차”, “&lt;붙임 2&gt;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고한다.</p>	<p><b>3.5 1단계 평가(PQ) 제출 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양식 1&gt; 사업제안서 제출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보고서 등록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첨부 1-1&gt; 대표사 선임서</li> <li>- &lt;첨부 1-2&gt; 컨소시엄 협약서(자유양식)</li> </ul> </li> <li>○ &lt;양식 2&gt; 법인사용인감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첨부 2-1&gt; 법인인감증명서</li> <li>- &lt;첨부 2-2&gt; 사업자등록증</li> </ul> </li> <li>○ 제1권 사전자격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양식 3&gt; 시공(운영) 실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첨부 3-1&gt; 시공(운영) 실적 증명서류</li> <li>· &lt;첨부 3-2&gt; 시공(운영) 능력 확인을 위한 업·면허 증명서류</li> </ul> </li> <li>- &lt;양식 4&gt; 신용등급 및 자본 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첨부 4-1&gt; 최근 2년간 신용평가서, 직전년도 결산보고서</li> </ul> </li> <li>- &lt;양식 5&gt; 사업시행자 구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lt;양식 6&gt; 출자 투자 협약서 또는 &lt;양식 6-1&gt; 조건부 출자 투자 협약서</b></li> </ul> </li> <li>-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협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협약서</li> </ul> </li> <li>○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사본, 담당자 명함(연락처, E-mail 주소 등)</li> <li>○ 제출 서류 목록 중 누락 항목이 있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업제안 자료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li> </ul> <p><b>3.6 2단계 평가(기술능력 및 재무능력) 제출 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권 사업제안서(정성지표)</li> <li>○ 제3권 사업제안서(정량지표)</li> </ul> <p>※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lt;붙임1&gt;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및 목차”, “&lt;붙임 2&gt;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고한다.</p>

당초	정정																				
<h3>제4장 사업제안서 평가</h3>	<h3>제4장 사업제안서 평가</h3>																				
<p>1.1. 4.1 1단계 평가(PQ) 항목 및 기준</p> <p>○ 다음 표의 평가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사업 제안 자격을 부여함.</p>	<p>1.2. 4.1 1단계 평가(PQ) 항목 및 기준</p> <p>○ 다음 표의 평가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사업 제안 자격을 부여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공 또는 운영 실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평가한다.</li> <li>- 사업제안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10년 내 준공된 단일 용량 100MW 이상의 국내·외 발전소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보유하여야 적격대상으로 한다.(단, 태양광발전소 제외)</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용등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한다.</li> <li>- 대표사는 최근 2년간 회사채 신용등급 A-(또는 이와 동급인 신용평가등급)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li> <li>- 최근 2년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각 법인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한다.</li> <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본 총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자본 총계를 평가한다.</li> <li>- 직전년도 결산 기준의 자본 총계가 추정 총사업비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투자 및 대출 계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투자 계약 및 대출 계약 여부를 평가한다.</li> <li>-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b>출자자의 투자계약서</b>,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계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시공 또는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평가한다.</li> <li>- 사업제안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10년 내 준공된 단일 용량 100MW 이상의 국내·외 발전소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보유하여야 적격대상으로 한다.(단, 태양광발전소 제외)</li> </ul>	신용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한다.</li> <li>- 대표사는 최근 2년간 회사채 신용등급 A-(또는 이와 동급인 신용평가등급)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li> <li>- 최근 2년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각 법인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한다.</li> <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자본 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자본 총계를 평가한다.</li> <li>- 직전년도 결산 기준의 자본 총계가 추정 총사업비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li> </ul>	투자 및 대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투자 계약 및 대출 계약 여부를 평가한다.</li> <li>-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b>출자자의 투자계약서</b>,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계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공 또는 운영 실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평가한다.</li> <li>- 사업제안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10년 내 준공된 단일 용량 100MW 이상의 국내·외 발전소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보유하여야 적격대상으로 한다.(단, 태양광발전소 제외)</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용등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한다.</li> <li>- 대표사는 최근 2년간 회사채 신용등급 A-(또는 이와 동급인 신용평가등급)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li> <li>- 최근 2년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각 법인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한다.</li> <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본 총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자본 총계를 평가한다.</li> <li>- 직전년도 결산 기준의 자본 총계가 추정 총사업비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투자 및 대출 계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투자 계약 및 대출 계약 여부를 평가한다.</li> <li>-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b>출자자의 투자 계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 계약서</b>,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계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시공 또는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평가한다.</li> <li>- 사업제안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10년 내 준공된 단일 용량 100MW 이상의 국내·외 발전소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보유하여야 적격대상으로 한다.(단, 태양광발전소 제외)</li> </ul>	신용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한다.</li> <li>- 대표사는 최근 2년간 회사채 신용등급 A-(또는 이와 동급인 신용평가등급)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li> <li>- 최근 2년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각 법인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한다.</li> <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자본 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자본 총계를 평가한다.</li> <li>- 직전년도 결산 기준의 자본 총계가 추정 총사업비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li> </ul>	투자 및 대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투자 계약 및 대출 계약 여부를 평가한다.</li> <li>-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b>출자자의 투자 계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 계약서</b>,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계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구 분	기 준																				
시공 또는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평가한다.</li> <li>- 사업제안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10년 내 준공된 단일 용량 100MW 이상의 국내·외 발전소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보유하여야 적격대상으로 한다.(단, 태양광발전소 제외)</li> </ul>																				
신용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한다.</li> <li>- 대표사는 최근 2년간 회사채 신용등급 A-(또는 이와 동급인 신용평가등급)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li> <li>- 최근 2년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각 법인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한다.</li> <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자본 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자본 총계를 평가한다.</li> <li>- 직전년도 결산 기준의 자본 총계가 추정 총사업비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li> </ul>																				
투자 및 대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투자 계약 및 대출 계약 여부를 평가한다.</li> <li>-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b>출자자의 투자계약서</b>,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계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구 분	기 준																				
시공 또는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평가한다.</li> <li>- 사업제안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10년 내 준공된 단일 용량 100MW 이상의 국내·외 발전소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보유하여야 적격대상으로 한다.(단, 태양광발전소 제외)</li> </ul>																				
신용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한다.</li> <li>- 대표사는 최근 2년간 회사채 신용등급 A-(또는 이와 동급인 신용평가등급)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li> <li>- 최근 2년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각 법인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한다.</li> <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자본 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자본 총계를 평가한다.</li> <li>- 직전년도 결산 기준의 자본 총계가 추정 총사업비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li> </ul>																				
투자 및 대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투자 계약 및 대출 계약 여부를 평가한다.</li> <li>-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b>출자자의 투자 계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 계약서</b>,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계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p>&lt;표 4-1 1단계 평가(PQ) 항목 및 기준&gt;</p>	<p>&lt;표 4-1 1단계 평가(PQ) 항목 및 기준&gt;</p>																				

당초					
4.2 2단계 평가(기술능력 및 재무능력) 항목 및 배점					
○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한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능력평가	정성적평가분야	사업 및 조직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역 현황조사 및 분석</li> <li>사전 인허가 협의 결과 반영계획</li> <li>사업관리 조직 구성 계획</li> <li>재원 조달 계획</li> </ul>	5	심사위원 평가
		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건설계획</li> <li>해상풍력 Risk 관리 계획</li> <li>종합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계획</li> </ul>	10	
		단지 운영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풍력설비 종합 운영관리계획</li> <li>운영관리 시스템 구성,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li> <li>성능보증 및 하자보증</li> <li>사후 관리 계획</li> </ul>	10	
		지역사회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 풍력산업 활성화 및 지역 청·장년 일자리 창출 계획</li> <li>제주에너지공사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 협업방안</li> <li>발전단지 유치마을 숙원사업 실현 계획, 지역사회 공헌 실적 및 계획</li> <li>기타 수익 환원 계획</li> </ul>	5	
		소 계	30		
재무능력평가	정량적평가분야	총사업비		통과 또는 자격상실	
		발전량 및 REC 가중치 산정의 적정성			
		배당금 및 이익공유화	제주에너지공사 배당금		55
			주민참여형(지분 및 채권) 주민 수익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납부 금액		
			제주에너지공사 발전기금 납부 금액		
			<b>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 납부 금액</b>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	주민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		10
지자체(공사)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					
지역업체 활성화	지역업체 시공 참여 비율 및 금액		5		
소 계			70		
총 계			100		
가점	제주에너지공사 의결권 위임 비율		10	담당자 평가	

<표 4-2 분야별 평가 항목 및 배점>

정정					
4.2 2단계 평가(기술능력 및 재무능력) 항목 및 배점					
○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한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능력평가	정성적평가분야	사업 및 조직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역 현황조사 및 분석</li> <li>사전 인허가 협의 결과 반영계획</li> <li>사업관리 조직 구성 계획</li> <li>재원 조달 계획</li> </ul>	5	심사위원 평가
		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건설계획</li> <li>해상풍력 Risk 관리 계획</li> <li>종합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계획</li> </ul>	10	
		단지 운영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풍력설비 종합 운영관리계획</li> <li>운영관리 시스템 구성,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li> <li>성능보증 및 하자보증</li> <li>사후 관리 계획</li> </ul>	10	
		지역사회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 풍력산업 활성화 및 지역 청·장년 일자리 창출 계획</li> <li>제주에너지공사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 협업방안</li> <li>발전단지 유치마을 숙원사업 실현 계획, 지역사회 공헌 실적 및 계획</li> <li>기타 수익 환원 계획</li> </ul>	5	
		소 계	30		
재무능력평가	정량적평가분야	총사업비		통과 또는 자격상실	
		발전량 및 REC 가중치 산정의 적정성			
		배당금 및 이익공유화	제주에너지공사 배당금		55
			주민참여형(지분 및 채권) 주민 수익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납부 금액		
			제주에너지공사 발전기금 납부 금액		
			<b>발전단지 유치마을 발전기금 납부 금액</b>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	주민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		10
지자체(공사)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					
지역업체 활성화	지역업체 시공 참여 비율 및 금액		5		
소 계			70		
총 계			100		
가점	제주에너지공사 의결권 위임 비율		10	담당자 평가	

<표 4-2 분야별 평가 항목 및 배점>

○ (A-1 관련) 공모지침서 p. 48

당초				정정			
신 용 평 가 등 급			비고	신 용 평 가 등 급			비고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 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 에 준하는 등급	
<b>A-</b>	<b>A2-</b>	<b>①의 A-에 준하는 등급</b>	<b>대표사</b>	<b>A-</b>	<b>A2-</b>	<b>①의 A-에 준하는 등급</b>	<b>대표사</b>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 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 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 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 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표 4-3 신용등급 평가 기준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본 총계**

○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자본 총계를 평가한다.

- 직전년도 결산 기준의 자본 총계가 추정 총사업비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

**라. 투자 및 대출 확약**

○ 사업제안자의 투자 확약 및 대출 확약 여부를 평가한다.

-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각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4-3 신용등급 평가 기준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본 총계**

○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자본 총계를 평가한다.

- 직전년도 결산 기준의 자본 총계가 추정 총사업비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으로 한다.

**라. 투자 및 대출 확약**

○ 사업제안자의 투자 확약 및 대출 확약 여부를 평가한다.

-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각 **출자자의 투자 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 확약서**,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F-10 관련) 공모지침서 p. 52

당초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마을 <b>지원금</b> 납부 금액 = <b>지원금</b>의 20년간 총액에 대한 현재가치</li> <li>※ 현재가치 기준일은 상업운전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마다 할인율은 6%를 적용한다.</li> <li>※ 주민참여형(지분 및 채권) 주민 수익금은 발전단지 유치마을별로 제안하여야 한다.</li> <li>※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당기순이익의 17.5% 이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당기순이익의 17.5% 미만일 경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li> <li>※ 공사 배당금 및 주민참여형(지분 및 채권) 주민 수익금은 상업운전 개시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 제주에너지공사 및 발전단지 유치마을 발전기금은 매년 확정적 금액으로 제시한다.</li> </ul> <p>-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10점)</p> <hr/>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제안자 제안액) ÷ (사업제안자 중 최고 제안액)} × 배점(10점)</p> <hr/> <p style="text-align: center;">〈표 4-8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 평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개별 제안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으로 하며 이 중 최고 제안액을 제안한 사업자의 제안액을 사업제안자 중 최고 제안액으로 한다.</li> <li>• 사업제안자의 제안액 = 주민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 + 지자체(제주에너지공사) 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li> <li>• 주민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 = 수익금(REC 0.1 이상 해당액)의 20년간 총액에 대한 현재가치</li> <li>• 지자체(제주에너지공사)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 = 수익금(REC 0.1 이상 해당액)의 20년간 총액에 대한 현재가치</li> <li>※ 현재가치 기준일은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마다 할인율은 6%를 적용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마을 <b>발전기금</b> 납부 금액 = <b>발전기금</b>의 20년간 총액에 대한 현재가치</li> <li>※ 현재가치 기준일은 상업운전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마다 할인율은 6%를 적용한다.</li> <li>※ 주민참여형(지분 및 채권) 주민 수익금은 발전단지 유치마을별로 제안하여야 한다.</li> <li>※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당기순이익의 17.5% 이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당기순이익의 17.5% 미만일 경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li> <li>※ 공사 배당금 및 주민참여형(지분 및 채권) 주민 수익금은 상업운전 개시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 제주에너지공사 및 발전단지 유치마을 발전기금은 매년 확정적 금액으로 제시한다.</li> </ul> <p>-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10점)</p> <hr/>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제안자 제안액) ÷ (사업제안자 중 최고 제안액)} × 배점(10점)</p> <hr/> <p style="text-align: center;">〈표 4-8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 평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제안자의 개별 제안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으로 하며 이 중 최고 제안액을 제안한 사업자의 제안액을 사업제안자 중 최고 제안액으로 한다.</li> <li>• 사업제안자의 제안액 = 주민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 + 지자체(제주에너지공사) 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li> <li>• 주민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 = 수익금(REC 0.1 이상 해당액)의 20년간 총액에 대한 현재가치</li> <li>• 지자체(제주에너지공사)참여형 우대가중치 수익금 = 수익금(REC 0.1 이상 해당액)의 20년간 총액에 대한 현재가치</li> <li>※ 현재가치 기준일은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마다 할인율은 6%를 적용한다.</li> </ul>

○ (E-20 관련) 공모지침서 p. 57

당초	정정
<p>③ 발전단지 유치마을 숙원사업 실현 계획, 지역사회공헌 실적 및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단지 유치마을의 숙원사업 실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li> <li>-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공헌 실적 및 계획(햇수, 금액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li> </ul> <p>④ 기타 수익 환원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익 등 기타 수익 환원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li> </ul> <p>4.3.2.2 정량적 평가(70점)</p> <p>1) 총사업비(통과 또는 자격 상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의 총사업비 제안 단가금액이 “제1장 1.3 사업개요”의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는지를 평가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li> </ul> <p>2) 발전량 및 REC 가중치 산정의 적정성(통과 또는 자격 상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전문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발전량 제시 여부를 평가한다.</li> <li>- 풍황자료 분석, 풍력발전기 성능곡선, 발전량 산정 기관의 적정성, 발전량 REC 가중치 산정의 근거 등 발전량 산정과 REC 가중치 산정과 관련하여 허위로 제시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li> <li>- 주기기는 정부조달협정 회원국(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제품에만 하며, 발전량 산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p>3) 배당금 및 이익 공유화(55점)</p>	<p>③ 발전단지 유치마을 숙원사업 실현 계획, 지역사회공헌 실적 및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단지 유치마을의 숙원사업 실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li> <li>-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공헌 실적 및 계획(삭제)의 적정성을 평가한다.</li> </ul> <p>④ 기타 수익 환원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익 등 기타 수익 환원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li> </ul> <p>4.3.2.2 정량적 평가(70점)</p> <p>1) 총사업비(통과 또는 자격 상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의 총사업비 제안 단가금액이 “제1장 1.3 사업개요”의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는지를 평가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li> </ul> <p>2) 발전량 및 REC 가중치 산정의 적정성(통과 또는 자격 상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전문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발전량 제시 여부를 평가한다.</li> <li>- 풍황자료 분석, 풍력발전기 성능곡선, 발전량 산정 기관의 적정성, 발전량 REC 가중치 산정의 근거 등 발전량 산정과 REC 가중치 산정과 관련하여 허위로 제시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li> <li>- 주기기는 정부조달협정 회원국(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제품에만 하며, 발전량 산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p>3) 배당금 및 이익 공유화(55점)</p>

○ (F-10 관련) 공모지침서 p. 58

당초	정정
<p>- 본 사업의 수익을 통해 제주에너지공사 배당금, 주민참여형(주식형 또는 채권형) 주민 수익금, 풍력자원공유화 기금 납부 금액, 제주에너지공사 발전기금 납부 금액, 발전단지 유치마을 <b>지원금</b> 납부 금액의 20년 총액(현재가치)의 합계액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제안사업자 중 최대값을 제안사업자의 제안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p> <p>※ 현재가치 기준일은 상업운전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마다 할인율은 6%를 적용한다.</p> <p>※ 주민참여형(지분 및 채권) 주민 수익금은 발전단지 유치마을별로 제안하여야 한다.</p> <p>※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당기순이익의 17.5% 이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당기순이익의 17.5% 미만일 경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p> <p>※ 공사 배당금 및 주민참여형(지분 및 채권) 주민 수익금은 상업운전 개시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발전단지 유치마을 발전기금은 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운영기간 연간 1,000만원/MW)과 별도로 적용된다.</p> <p>※ 제주에너지공사 및 발전단지 유치마을 발전기금은 매년 확정적 금액으로 제시한다.</p> <p><b>⑤ 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 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의 20년 총액(현재가치)</b></p> <p><b>※ 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은 매년 확정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b></p>	<p>- 본 사업의 수익을 통해 제주에너지공사 배당금, 주민참여형(주식형 또는 채권형) 주민 수익금, 풍력자원공유화 기금 납부 금액, 제주에너지공사 발전기금 납부 금액, 발전단지 유치마을 <b>발전기금</b> 납부 금액의 20년 총액(현재가치)의 합계액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제안사업자 중 최대값을 제안사업자의 제안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p> <p>※ 현재가치 기준일은 상업운전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마다 할인율은 6%를 적용한다.</p> <p>※ 주민참여형(지분 및 채권) 주민 수익금은 발전단지 유치마을별로 제안하여야 한다.</p> <p>※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당기순이익의 17.5% 이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당기순이익의 17.5% 미만일 경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p> <p>※ 공사 배당금 및 주민참여형(지분 및 채권) 주민 수익금은 상업운전 개시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발전단지 유치마을 발전기금은 발전단지 유치마을 지원금(운영기간 연간 1,000만원/MW)과 별도로 적용된다.</p> <p>※ 제주에너지공사 및 발전단지 유치마을 발전기금은 매년 확정적 금액으로 제시한다.</p> <p><b>(삭제)</b></p> <p><b>(삭제)</b></p>
<p><b>4)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10점)</b></p> <p>- 주민참여형 및 지자체 참여형 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REC 0.1 이상 해당액)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와 발전단지 유치마을에 배당되는 금액의 20년 총액(현재가치)의 합계액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제안자의 제안액을 사업제안자 중 최고 제안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p>	<p><b>4)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10점)</b></p> <p>- 주민참여형 및 지자체 참여형 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REC 0.1 이상 해당액)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와 발전단지 유치마을에 배당되는 금액의 20년 총액(현재가치)의 합계액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제안자의 제안액을 사업제안자 중 최고 제안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p>

○ (F-6 관련) 공모지침서 p. 88

당초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법</li> <li>-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li> <li>-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li>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li> <li>- 폐기물관리법</li> <li>- 화학물질관리법</li> <li>- 환경오염공정시험법</li> <li>- 환경정책기본법</li> <li>- 기타 본사업과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li> </ul> <p>○ 주요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li> <li>- IEC(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ion)</li> <li>-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li> <li>- 건축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li> <li>- 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련 설계기준</li> <li>-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li> <li>-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li> <li>-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li> <li>-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li> <li>- <b>내선규정, 배전규정</b></li> <li>-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li> <li>-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li> <li>-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제도 관리·운영지침</li> <li>-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li> <li>-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li> <li>- 전기설비기술기준, <b>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법</li> <li>-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li> <li>-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li>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li> <li>- 폐기물관리법</li> <li>- 화학물질관리법</li> <li>- 환경오염공정시험법</li> <li>- 환경정책기본법</li> <li>- 기타 본사업과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li> </ul> <p>○ 주요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li> <li>- IEC(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ion)</li> <li>-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li> <li>- 건축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li> <li>- 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련 설계기준</li> <li>-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li> <li>-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li> <li>-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li> <li>-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li> <li>- <b>(삭제)</b></li> <li>-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li> <li>-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li> <li>-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제도 관리·운영지침</li> <li>-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li> <li>-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li> <li>- 전기설비기술기준<b>(삭제)</b></li> </ul>

○ (C-4, E-17 관련) 공모지침서 p. 97

당초	정정																																																																																																
<p>- 측정 기간 : 행원 MM(2018.12. ~ 2020. 11.)                      월정해상 MM(2018.12. ~ 2020.11.)                      - 데이터 복구율 : 행원 MM(99.48%), 월정해상 MM(99.97%)</p> <p>2) 연평균 풍황데이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평균풍속 (m/s)</th> <th>에너지밀도</th> <th>연 평균 풍력 밀도(W/m<sup>2</sup>)</th> <th>주풍향</th> <th>기온 (℃)</th> <th>해상 공기 밀도(kg/m<sup>3</sup>)</th> </tr> </thead> <tbody> <tr> <td>8.0</td> <td>5,325</td> <td>607.8</td> <td>북서풍 (300°)</td> <td>15.2</td> <td>1.212</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표 6-3 연평균 풍황데이터&gt;</p> <p>※ 상기 연평균 풍황데이터는 AEP 추정 용역 참고용 자료이며, 사업제안자가 풍황 데이터를 검토 후 제시 및 반영하여야 한다.</p> <p><b>바. 제주도 내 출력제한 현황</b></p> <p style="color: red;">사업제안자는 제주도 내 출력제한 현황을 바탕으로 출력제한 최소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풍력발전 출력제어횟수</th> <th>출력제어량 (MWh)</th> <th>풍력발전전체발전량 비중(%)</th> </tr> </thead> <tbody> <tr><td>2015년</td><td>3회</td><td>152</td><td>0.04</td></tr> <tr><td>2016년</td><td>6회</td><td>252</td><td>0.05</td></tr> <tr><td>2017년</td><td>16회</td><td>1,301</td><td>0.24</td></tr> <tr><td>2018년</td><td>17회</td><td>1,366</td><td>0.25</td></tr> <tr><td>2019년</td><td>46회</td><td>9,223</td><td>1.60</td></tr> <tr><td>2020년</td><td>77회</td><td>19,449</td><td>3.24</td></tr> <tr><td>2021년</td><td>64회</td><td>12,016</td><td>2.30</td></tr> <tr><td>2022년</td><td>104회</td><td>25,635</td><td>4.43</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표 6-4 제주도 내 출력제한 현황&gt;</p> <p><b>6.3.3.4.3 설계 시 반영사항</b></p> <p>사업시행자는 국내외 인증기관(GL, DNV, DEWI-OCC 등)으로부터 득한 설계 인증서 취득조건 및 본 설계조건을 만족 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 공급사를 선정하여 설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p>	평균풍속 (m/s)	에너지밀도	연 평균 풍력 밀도(W/m <sup>2</sup> )	주풍향	기온 (℃)	해상 공기 밀도(kg/m <sup>3</sup> )	8.0	5,325	607.8	북서풍 (300°)	15.2	1.212	구분	풍력발전 출력제어횟수	출력제어량 (MWh)	풍력발전전체발전량 비중(%)	2015년	3회	152	0.04	2016년	6회	252	0.05	2017년	16회	1,301	0.24	2018년	17회	1,366	0.25	2019년	46회	9,223	1.60	2020년	77회	19,449	3.24	2021년	64회	12,016	2.30	2022년	104회	25,635	4.43	<p>- 측정 기간 : 행원 MM(2018.12. ~ 2020. 11.)                      월정해상 MM(2018.12. ~ 2020.11.)                      - 데이터 복구율 : 행원 MM(99.48%), 월정해상 MM(99.97%)</p> <p>2) 연평균 풍황데이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평균풍속 (m/s)</th> <th>에너지밀도</th> <th>연 평균 풍력 밀도(W/m<sup>2</sup>)</th> <th>주풍향</th> <th>기온 (℃)</th> <th>해상 공기 밀도(kg/m<sup>3</sup>)</th> </tr> </thead> <tbody> <tr> <td>8.0</td> <td>5,325</td> <td>607.8</td> <td>북서풍 (300°)</td> <td>15.2</td> <td>1.212</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표 6-3 연평균 풍황데이터&gt;</p> <p>※ 상기 연평균 풍황데이터는 AEP 추정 용역 참고용 자료이며, 사업제안자가 풍황 데이터를 검토 후 제시 및 반영하여야 한다.</p> <p><b>바. 제주도 내 출력제한 현황</b></p> <p style="color: blue;">(삭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풍력발전 출력제어횟수</th> <th>출력제어량 (MWh)</th> <th>풍력발전전체발전량 비중(%)</th> </tr> </thead> <tbody> <tr><td>2015년</td><td>3회</td><td>152</td><td>0.04</td></tr> <tr><td>2016년</td><td>6회</td><td>252</td><td>0.05</td></tr> <tr><td>2017년</td><td>16회</td><td>1,301</td><td>0.24</td></tr> <tr><td>2018년</td><td>17회</td><td>1,366</td><td>0.25</td></tr> <tr><td>2019년</td><td>46회</td><td>9,223</td><td>1.60</td></tr> <tr><td>2020년</td><td>77회</td><td>19,449</td><td>3.24</td></tr> <tr><td>2021년</td><td>64회</td><td>12,016</td><td>2.30</td></tr> <tr><td>2022년</td><td>104회</td><td>25,635</td><td>4.43</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표 6-4 제주도 내 출력제한 현황&gt;</p> <p><b>6.3.3.4.3 설계 시 반영사항</b></p> <p>사업시행자는 국내외 인증기관(GL, DNV, DEWI-OCC 등)으로부터 득한 설계 인증서 취득조건 및 본 설계조건을 만족 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 공급사를 선정하여 설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p>	평균풍속 (m/s)	에너지밀도	연 평균 풍력 밀도(W/m <sup>2</sup> )	주풍향	기온 (℃)	해상 공기 밀도(kg/m <sup>3</sup> )	8.0	5,325	607.8	북서풍 (300°)	15.2	1.212	구분	풍력발전 출력제어횟수	출력제어량 (MWh)	풍력발전전체발전량 비중(%)	2015년	3회	152	0.04	2016년	6회	252	0.05	2017년	16회	1,301	0.24	2018년	17회	1,366	0.25	2019년	46회	9,223	1.60	2020년	77회	19,449	3.24	2021년	64회	12,016	2.30	2022년	104회	25,635	4.43
평균풍속 (m/s)	에너지밀도	연 평균 풍력 밀도(W/m <sup>2</sup> )	주풍향	기온 (℃)	해상 공기 밀도(kg/m <sup>3</sup> )																																																																																												
8.0	5,325	607.8	북서풍 (300°)	15.2	1.212																																																																																												
구분	풍력발전 출력제어횟수	출력제어량 (MWh)	풍력발전전체발전량 비중(%)																																																																																														
2015년	3회	152	0.04																																																																																														
2016년	6회	252	0.05																																																																																														
2017년	16회	1,301	0.24																																																																																														
2018년	17회	1,366	0.25																																																																																														
2019년	46회	9,223	1.60																																																																																														
2020년	77회	19,449	3.24																																																																																														
2021년	64회	12,016	2.30																																																																																														
2022년	104회	25,635	4.43																																																																																														
평균풍속 (m/s)	에너지밀도	연 평균 풍력 밀도(W/m <sup>2</sup> )	주풍향	기온 (℃)	해상 공기 밀도(kg/m <sup>3</sup> )																																																																																												
8.0	5,325	607.8	북서풍 (300°)	15.2	1.212																																																																																												
구분	풍력발전 출력제어횟수	출력제어량 (MWh)	풍력발전전체발전량 비중(%)																																																																																														
2015년	3회	152	0.04																																																																																														
2016년	6회	252	0.05																																																																																														
2017년	16회	1,301	0.24																																																																																														
2018년	17회	1,366	0.25																																																																																														
2019년	46회	9,223	1.60																																																																																														
2020년	77회	19,449	3.24																																																																																														
2021년	64회	12,016	2.30																																																																																														
2022년	104회	25,635	4.43																																																																																														

○ (B-30 관련) 공모지침서 p. 99

당초	정정														
<p>IEC 61400-11 또는 DIN EN 61400-1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준수하여야 한다.</p> <p><b>라. 진동</b> 회전기기는 성능보증의 요구 항목에 대하여 관련 규격 및 진동치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b>마. 그림자 영향 분석(Shadow)</b> <b>현재 그림자 영향분석에 대한 명확한 국내기준은 없으므로, 해외 기준(독일 그림자영향 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수행하며 그림자 영향을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Module</th> <th style="text-align: center;">분석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그림자영향 (Shadow)</td> <td>명멸시간(worst case) (독일규정 에서는 최대 30시간으로 제한-worst case)</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h/year]</td> <td></td> </tr> <tr> <td>명멸일(worst cast) [days/yea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일일최고명멸시간 (독일규정 에서는 최대 30분으로 제한-worst case)</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min/day]</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lt;표 6-5 그림자 영향 분석 기준&gt;</b></p> <p><b>바. 풍황</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용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 6.3절에 따라 설계근거로 선택한 풍력발전기 등급에서 정의된 바람조건에 기초가 안전하게 견디도록 설계해야 한다.</li> <li>하중과 안전 하중과 안전을 고려하여, 바람영역은 해상용 풍력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운전될 때 1년에 한 번 이상 자주 발생하는 정상바람조건과 1년 또는 50년 주기로 재현되는 극치바람조건으로 나뉜다.</li> <li>해상용 풍력발전기의 지지구조물 설계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사이트를 대표하는 바람조건에 기초해야 하고, 이것을 IEC 61400-3 12장에 언급된 요구조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li> <li>로터-나셀 조립품의 설계를 위해 가정된 바람조건은 사이트 데이터이거나 IEC</li> </ol>	Module	분석내용	기준	비고	그림자영향 (Shadow)	명멸시간(worst case) (독일규정 에서는 최대 30시간으로 제한-worst case)	30 [h/year]		명멸일(worst cast) [days/year]	-		일일최고명멸시간 (독일규정 에서는 최대 30분으로 제한-worst case)	30 [min/day]		<p>IEC 61400-11 또는 DIN EN 61400-1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준수하여야 한다.</p> <p><b>라. 진동</b> 회전기기는 성능보증의 요구 항목에 대하여 관련 규격 및 진동치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b>마. (삭제)</b></p> <p><b>바. 풍황</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용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 6.3절에 따라 설계근거로 선택한 풍력발전기 등급에서 정의된 바람조건에 기초가 안전하게 견디도록 설계해야 한다.</li> <li>하중과 안전 하중과 안전을 고려하여, 바람영역은 해상용 풍력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운전될 때 1년에 한 번 이상 자주 발생하는 정상바람조건과 1년 또는 50년 주기로 재현되는 극치바람조건으로 나뉜다.</li> <li>해상용 풍력발전기의 지지구조물 설계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사이트를 대표하는 바람조건에 기초해야 하고, 이것을 IEC 61400-3 12장에 언급된 요구조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li> <li>로터-나셀 조립품의 설계를 위해 가정된 바람조건은 사이트 데이터이거나 IEC</li> </ol>
Module	분석내용	기준	비고												
그림자영향 (Shadow)	명멸시간(worst case) (독일규정 에서는 최대 30시간으로 제한-worst case)	30 [h/year]													
	명멸일(worst cast) [days/year]	-													
	일일최고명멸시간 (독일규정 에서는 최대 30분으로 제한-worst case)	30 [min/day]													

○ (B-30 관련) 공모지침서 p. 105

당초	정정
<p>1) 사업시행자는 풍력발전단지 설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 운영토록하고 설치 전 미흡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의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p> <p>2) 사업시행자는 시공 시와 운영 시에 안전을 고려하여 필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p> <p>3) 사업시행자는 풍황 분석 및 발전기 배치, 그리고 발전량 계산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Wind pro를 사용해야 하며 풍력발전기의 내구성(발전기 수명) 및 발전량 등 각종 계산자료(전자파일 포함)를 작성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해야 한다.</p> <p>4) 사업시행자는 해상 풍력발전 단지 배치에 따른 프로그램 Wind pro setting 자료, 내구성 검토 자료,소음, <u>그림자 영향</u>, 하중분석 등 Wind pro 자료(전자파일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해야 한다.</p>	<p>1) 사업시행자는 풍력발전단지 설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 운영토록하고 설치 전 미흡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의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p> <p>2) 사업시행자는 시공 시와 운영 시에 안전을 고려하여 필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p> <p>3) 사업시행자는 풍황 분석 및 발전기 배치, 그리고 발전량 계산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Wind pro를 사용해야 하며 풍력발전기의 내구성(발전기 수명) 및 발전량 등 각종 계산자료(전자파일 포함)를 작성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해야 한다.</p> <p>4) 사업시행자는 해상 풍력발전 단지 배치에 따른 프로그램 Wind pro setting 자료, 내구성 검토 자료,소음, <u>(삭제)</u> 하중분석 등 Wind pro 자료(전자파일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해야 한다.</p>
<p><b>6.3.3.5 건설시공</b></p>	<p><b>6.3.3.5 건설시공</b></p>
<p>○ 사업제안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관련된 선진기술 도입, 시공안전관리계획, 보험의 가입 등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대비책 및 사후수습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 사업제안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투입은 공사비 공정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다.</p> <p>○ 사업시행자는 대표사업자가 제출한 시업제안서의 사업기술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p>○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 공사에 관한 계획, 타당성 조사 등 건설사업 관리를 해야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비용은 사업시행협약에서 최종 확정하기로한다.</p>	<p>○ 사업제안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관련된 선진기술 도입, 시공안전관리계획, 보험의 가입 등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대비책 및 사후수습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 사업제안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투입은 공사비 공정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다.</p> <p>○ 사업시행자는 대표사업자가 제출한 시업제안서의 사업기술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p>○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 공사에 관한 계획, 타당성 조사 등 건설사업 관리를 해야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비용은 사업시행협약에서 최종 확정하기로한다.</p>

당초	정정																																																						
<p>&lt;붙임 2&gt;</p> <h2 style="margin: 0;">제안서 작성 지침</h2>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20%;">작성 항목</th> <th style="width:50%;">작성 방법</th> <th style="width:30%;">활용양식</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b>제1권 사전자격심사서류</b></td> </tr> <tr> <td colspan="3"><b>제1장 사전자격심사</b></td> </tr> <tr> <td>1.1. 시공(운영) 실적</td> <td>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국내외 최근 10년 내 준공된 단일 규모 최대 용량의 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태양광발전소 제외) ※ 상기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 실적은 해당국 상공회의소 또는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협약 확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업체가 발급한 경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lt;양식3&gt;</td> </tr> <tr> <td>1.2 신용등급 및 자본 총계</td> <td>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자본총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lt;양식4&gt;</td> </tr> <tr> <td>1.3 사업시행자 구성 계획</td> <td>사업시행자 구성 계획을 제시하고, 구성 계획에 따른 직접투자분에 대하여 <b>출자자의 투자확약서와</b>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lt;양식5&gt;, &lt;양식6&gt;</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3"><b>제2권 사업제안서(정성지표)</b></th> </tr> <tr> <th colspan="3"><b>제1장 제안 개요</b></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20%;"></td> <td style="width:50%;">제안자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td> <td style="width:30%;"></td> </tr> </tbody> </table>	작성 항목	작성 방법	활용양식	<b>제1권 사전자격심사서류</b>			<b>제1장 사전자격심사</b>			1.1. 시공(운영) 실적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국내외 최근 10년 내 준공된 단일 규모 최대 용량의 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태양광발전소 제외) ※ 상기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 실적은 해당국 상공회의소 또는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협약 확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업체가 발급한 경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3>	1.2 신용등급 및 자본 총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자본총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4>	1.3 사업시행자 구성 계획	사업시행자 구성 계획을 제시하고, 구성 계획에 따른 직접투자분에 대하여 <b>출자자의 투자확약서와</b>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양식5>, <양식6>	<b>제2권 사업제안서(정성지표)</b>			<b>제1장 제안 개요</b>				제안자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p>&lt;붙임 2&gt;</p> <h2 style="margin: 0;">제안서 작성 지침</h2>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20%;">작성 항목</th> <th style="width:50%;">작성 방법</th> <th style="width:30%;">활용양식</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b>제1권 사전자격심사서류</b></td> </tr> <tr> <td colspan="3"><b>제1장 사전자격심사</b></td> </tr> <tr> <td>1.1. 시공(운영) 실적</td> <td>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국내외 최근 10년 내 준공된 단일 규모 최대 용량의 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태양광발전소 제외) ※ 상기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 실적은 해당국 상공회의소 또는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협약 확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업체가 발급한 경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lt;양식3&gt;</td> </tr> <tr> <td>1.2 신용등급 및 자본 총계</td> <td>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자본총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lt;양식4&gt;</td> </tr> <tr> <td>1.3 사업시행자 구성 계획</td> <td>사업시행자 구성 계획을 제시하고, 구성 계획에 따른 직접투자분에 대하여 <b>출자자의 투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 확약서</b>,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lt;양식5&gt;, &lt;양식6&gt;</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3"><b>제2권 사업제안서(정성지표)</b></th> </tr> <tr> <th colspan="3"><b>제1장 제안 개요</b></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20%;"></td> <td style="width:50%;">제안자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td> <td style="width:30%;"></td> </tr> </tbody> </table>	작성 항목	작성 방법	활용양식	<b>제1권 사전자격심사서류</b>			<b>제1장 사전자격심사</b>			1.1. 시공(운영) 실적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국내외 최근 10년 내 준공된 단일 규모 최대 용량의 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태양광발전소 제외) ※ 상기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 실적은 해당국 상공회의소 또는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협약 확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업체가 발급한 경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3>	1.2 신용등급 및 자본 총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자본총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4>	1.3 사업시행자 구성 계획	사업시행자 구성 계획을 제시하고, 구성 계획에 따른 직접투자분에 대하여 <b>출자자의 투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 확약서</b> ,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양식5>, <양식6>	<b>제2권 사업제안서(정성지표)</b>			<b>제1장 제안 개요</b>				제안자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작성 항목	작성 방법	활용양식																																																					
<b>제1권 사전자격심사서류</b>																																																							
<b>제1장 사전자격심사</b>																																																							
1.1. 시공(운영) 실적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국내외 최근 10년 내 준공된 단일 규모 최대 용량의 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태양광발전소 제외) ※ 상기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 실적은 해당국 상공회의소 또는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협약 확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업체가 발급한 경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3>																																																					
1.2 신용등급 및 자본 총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자본총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4>																																																					
1.3 사업시행자 구성 계획	사업시행자 구성 계획을 제시하고, 구성 계획에 따른 직접투자분에 대하여 <b>출자자의 투자확약서와</b>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양식5>, <양식6>																																																					
<b>제2권 사업제안서(정성지표)</b>																																																							
<b>제1장 제안 개요</b>																																																							
	제안자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작성 항목	작성 방법	활용양식																																																					
<b>제1권 사전자격심사서류</b>																																																							
<b>제1장 사전자격심사</b>																																																							
1.1. 시공(운영) 실적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중 대표사의 국내외 최근 10년 내 준공된 단일 규모 최대 용량의 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태양광발전소 제외) ※ 상기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 실적은 해당국 상공회의소 또는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협약 확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업체가 발급한 경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3>																																																					
1.2 신용등급 및 자본 총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자본총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4>																																																					
1.3 사업시행자 구성 계획	사업시행자 구성 계획을 제시하고, 구성 계획에 따른 직접투자분에 대하여 <b>출자자의 투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 확약서</b> ,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양식5>, <양식6>																																																					
<b>제2권 사업제안서(정성지표)</b>																																																							
<b>제1장 제안 개요</b>																																																							
	제안자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당초			정정		
5.3 발전단지 유치마을 숙원사업 <b>(신설)</b>	- 발전단지 유치마을의 숙원사업 실현계획을 <b>수치화(횟수, 금액 등)하여</b> 발전단지 유치마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발전단지 유치마을 숙원 사업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예정) <b>- (신설)</b>		5.3 발전단지 유치마을 숙원사업, <b>지역사회공헌 실적 및 계획</b>	- 발전단지 유치마을의 숙원사업 실현계획을 <b>(삭제)</b> 발전단지 유치마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발전단지 유치마을 숙원 사업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예정) <b>-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공헌 실적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b>	
5.4 기타 수익 환원 계획	-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법률 등 기타 수익 환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4 기타 수익 환원 계획	-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법률 등 기타 수익 환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b>제3권 사업제안서(정량지표)</b>			<b>제3권 사업제안서(정량지표)</b>		
<b>제1장 사업비용 및 총발전량 추정</b>			<b>제1장 사업비용 및 총발전량 추정</b>		
1.1 총사업비	- “제3장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을 참고하여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사업개발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건설이자, 기타(예비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제안자가 판단하여 추가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추가 반영 ※ 제안 단가금액이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 상실	<양식5> <양식11> <양식12>	1.1 총사업비	- “제3장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을 참고하여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사업개발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건설이자, 기타(예비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제안자가 판단하여 추가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추가 반영 ※ 제안 단가금액이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 상실	<양식5> <양식11> <양식12>
1.2 운영비	- “제3장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을 참고하여 인건비, 제경비, 운영경비, 보험료, 유형자산대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운영비	- “제3장 3.2.2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을 참고하여 인건비, 제경비, 운영경비, 보험료, 유형자산대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추정 총발전량 및 REC 가중치	-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전문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발전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 인증기관에서 산정하지 아니한 발전량 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 상실 - 발전량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연간 발전량을 P50, P75, P90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수익성 산정 모델에 적용하는 연간 발전량은 P75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제안자가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REC 가중치를 제시하고, REC 가중치에 따라 발생하는 REC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내부망 거리를 반영한 REC 가중치를 산정한 경우, 사업제안서 공모일 현재 기준으로 공급	<양식9> <양식13>	1.3 추정 총발전량 및 REC 가중치	-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전문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발전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 인증기관에서 산정하지 아니한 발전량 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 상실 - 발전량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연간 발전량을 P50, P75, P90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수익성 산정 모델에 적용하는 연간 발전량은 P75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제안자가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REC 가중치를 제시하고, REC 가중치에 따라 발생하는 REC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내부망 거리를 반영한 REC 가중치를 산정한 경우, 사업제안서 공모일 현재 기준으로 공급	<양식9> <양식13>

○ (F-10 관련) 공모지침서 p. 124

당초			정정		
2.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구조표는 Spread sheet를 이용하여 전산 자료로 작성 및 제출(USB)하여야 한다.</li> <li>- 풍력자원공유화기금(당기순이익의 17.5% 이상으로 제안)을 불변가와 할인율 6%를 반영한 현재가치액을 제시하여야 한다.</li> <li>※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이 당기순이익의 17.5% 미만일 경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li> <li>※ 재무구조표는 Spread sheet를 이용하여 전산 자료로 작성 및 제출(USB)하여야 한다.</li> </ul>	<양식20>	2.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구조표는 Spread sheet를 이용하여 전산 자료로 작성 및 제출(USB)하여야 한다.</li> <li>- 풍력자원공유화기금(당기순이익의 17.5% 이상으로 제안)을 불변가와 할인율 6%를 반영한 현재가치액을 제시하여야 한다.</li> <li>※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이 당기순이익의 17.5% 미만일 경우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li> <li>※ 재무구조표는 Spread sheet를 이용하여 전산 자료로 작성 및 제출(USB)하여야 한다.</li> </ul>	<양식20>
2.4 제주에너지공사 발전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에너지공사 발전기금 납부 금액을 불변가와 할인율 6%를 반영한 현재가치액을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제주에너지공사 발전기금은 매년 확정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재무구조표는 Spread sheet를 이용하여 전산 자료로 작성 및 제출(USB)하여야 한다.</li> </ul>	<양식21>	2.4 제주에너지공사 발전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에너지공사 발전기금 납부 금액을 불변가와 할인율 6%를 반영한 현재가치액을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제주에너지공사 발전기금은 매년 확정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재무구조표는 Spread sheet를 이용하여 전산 자료로 작성 및 제출(USB)하여야 한다.</li> </ul>	<양식21>
2.5 발전단지 유치마을 발전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단지 유치마을 <b>지원금</b>을 불변가와 할인율 6%를 반영한 현재가치액을 마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제주에너지공사 발전단지 주변지역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동안 발전단지 유치마을에 매년 MW당 1,000만원의 지원금을 제외한 추가 발전기금은 매년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 재무구조표는 Spread sheet를 이용하여 전산 자료로 작성 및 제출(USB)하여야 한다.</li> </ul>	<양식22>	2.5 발전단지 유치마을 발전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단지 유치마을 <b>발전기금</b>을 불변가와 할인율 6%를 반영한 현재가치액을 마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제주에너지공사 발전단지 주변지역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동안 발전단지 유치마을에 매년 MW당 1,000만원의 지원금을 제외한 추가 발전기금은 매년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 재무구조표는 Spread sheet를 이용하여 전산 자료로 작성 및 제출(USB)하여야 한다.</li> </ul>	<양식22>
제3장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			제3장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		
3.1 주민참여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형 설비에 대한 REC 우대가중치 획득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익금을 불변가와 할인율 6%를 반영한 현재가치액을 마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우대가중치 수익금은 상업운전 개시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 재무구조표는 Spread sheet를 이용하여 전산 자료로 작성 및 제출(USB)하여야 한다.</li> </ul>	<양식23>	3.1 주민참여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형 설비에 대한 REC 우대가중치 획득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익금을 불변가와 할인율 6%를 반영한 현재가치액을 마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우대가중치 수익금은 상업운전 개시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 재무구조표는 Spread sheet를 이용하여 전산 자료로 작성 및 제출(USB)하여야 한다.</li> </ul>	<양식23>
3.2 지자체(공사)참여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공사)참여형 설비에 대한 REC 우대가중치 획득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익금을 불변가와 할인율 6%를 반영한 현재가치액을 제시하여야 한다.</li> </ul>	<양식23>	3.2 지자체(공사)참여 REC 우대가중치 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공사)참여형 설비에 대한 REC 우대가중치 획득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익금을 불변가와 할인율 6%를 반영한 현재가치액을 제시하여야 한다.</li> </ul>	<양식23>

○ (A-1 관련) 공모지침서 <양식 6-1> (신설)

당초	정정		
<p><b>(신설)</b></p>	<p>&lt;양식 6-1&gt;</p> <p style="text-align: center;"><b>조건부 출자 투자 협약서</b></p> <p>사업제안자 대표명 : 구성원 법인명 :</p> <p>본 법인은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제안자로서 우선협상 대상자 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일 익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lt;양식 6&gt; 출자 투자 협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출자 투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종류의 공모 사업에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가 배제됨에 동의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20px;"> <tr> <td style="width: 60%; text-align: center;">출자 참여 비율</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td> </tr> </table> <p>주 : 1) 사업제안자의 구성원 법인별로 작성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b></p>	출자 참여 비율	%
출자 참여 비율	%		

○ 공모지침서 <양식 13>

당초	정정																																																																																																																								
<p>&lt;양식 1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추정 총발전량</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MWh)</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u>2023년</u></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u>2024년</u></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u>2025년</u></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u>2026년</u></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u>2027년</u></td> </tr> <tr> <td>발전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28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29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30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31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32년</u></td> </tr> <tr> <td>발전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33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34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35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36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37년</u></td> </tr> <tr> <td>발전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38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39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40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41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42년</u></td> </tr> <tr> <td>발전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u>구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43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44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45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46년</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47년</u></td> </tr> <tr> <td><u>발전량</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b>추정 총발전량(20년)</b></td> </tr> </table> <p>주: 1) 추정 총발전량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전문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발전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제안하는 추정 총발전량을 만족할 수 있는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p>	구분	<u>2023년</u>	<u>2024년</u>	<u>2025년</u>	<u>2026년</u>	<u>2027년</u>	발전량						구분	<u>2028년</u>	<u>2029년</u>	<u>2030년</u>	<u>2031년</u>	<u>2032년</u>	발전량						구분	<u>2033년</u>	<u>2034년</u>	<u>2035년</u>	<u>2036년</u>	<u>2037년</u>	발전량						구분	<u>2038년</u>	<u>2039년</u>	<u>2040년</u>	<u>2041년</u>	<u>2042년</u>	발전량						<u>구분</u>	<u>2043년</u>	<u>2044년</u>	<u>2045년</u>	<u>2046년</u>	<u>2047년</u>	<u>발전량</u>						<b>추정 총발전량(20년)</b>						<p>&lt;양식 1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추정 총발전량</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MWh)</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1년차</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2년차</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3년차</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4년차</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5년차</td> </tr> <tr> <td>발전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6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7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8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9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차</td> </tr> <tr> <td>발전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11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2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3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4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5년차</td> </tr> <tr> <td>발전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16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7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8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9년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년차</td> </tr> <tr> <td>발전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b>추정 총발전량(20년)</b></td> </tr> </table> <p>주: 1) 추정 총발전량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전문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발전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제안하는 추정 총발전량을 만족할 수 있는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p>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발전량						구분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발전량						구분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발전량						구분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발전량						<b>추정 총발전량(20년)</b>					
구분	<u>2023년</u>	<u>2024년</u>	<u>2025년</u>	<u>2026년</u>	<u>2027년</u>																																																																																																																				
발전량																																																																																																																									
구분	<u>2028년</u>	<u>2029년</u>	<u>2030년</u>	<u>2031년</u>	<u>2032년</u>																																																																																																																				
발전량																																																																																																																									
구분	<u>2033년</u>	<u>2034년</u>	<u>2035년</u>	<u>2036년</u>	<u>2037년</u>																																																																																																																				
발전량																																																																																																																									
구분	<u>2038년</u>	<u>2039년</u>	<u>2040년</u>	<u>2041년</u>	<u>2042년</u>																																																																																																																				
발전량																																																																																																																									
<u>구분</u>	<u>2043년</u>	<u>2044년</u>	<u>2045년</u>	<u>2046년</u>	<u>2047년</u>																																																																																																																				
<u>발전량</u>																																																																																																																									
<b>추정 총발전량(20년)</b>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발전량																																																																																																																									
구분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발전량																																																																																																																									
구분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발전량																																																																																																																									
구분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발전량																																																																																																																									
<b>추정 총발전량(20년)</b>																																																																																																																									

○ 공모지침서 <양식 14>

당초							정정						
<양식 14> <b>사업시행자의 추정 손익계산서</b> (단위 : 백만원, %)							<양식 14> <b>사업시행자의 추정 손익계산서</b>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100		100		100	매 출 액		100		100		100
매 출 원 가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판매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이 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						
법인세전 순이익							법인세전 순이익						
법 인 세 등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2) SMP+IREC는 160원/kWh(SMP: 129.78원/kWh, REC: 30.22원)로 가정하여 산출하며, 본 추정 손익계산서에 따라 산출하여 제안하는 제주에너지공사 배당금, 주민참여형 주민 수익금은 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2) SMP+IREC는 165원/kWh(SMP: 129.78원/kWh, REC: 35.22원)로 가정하여 산출하며, 본 추정 손익계산서에 따라 산출하여 제안하는 제주에너지공사 배당금, 주민참여형 주민 수익금은 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